

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5. 2. .

제 안 자 : 기획재정위원장

수정이유

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핵심이 ‘정의’, ‘거래 상대방’ 및 ‘의무’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핵심사항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,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전자등록 및 발행과 관련된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204804호)이 「국회법」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·의결됨에 따라, 이를 반영하여 동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함.

수정주요내용

- 가. 안 제9조제1항제2호 중 “그 밖의 자”를 “전문금융기관등에 속하지 아니한 외국환거래 상대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로 수정함(안 제9조제1항제2호).
- 나. 안 제13조제13항 및 제14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각각 삭제함(안 제13조 및 안 부칙).

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9조제1항제2호 중 “그 밖의 자”를 “전문금융기관등에 속하지 아니한 외국환거래 상대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로 한다.

안 제13조제13항 및 제14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각각 삭제한다.

안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2조를 각각 삭제하고, 안 부칙 제3조를 제2조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<u>유흥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.</u> ③ (생략)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중개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. ⑤ (생략) ⑥ 이 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하여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및 「금융소비자 보호	<u>한다.</u> ③ (현행과 같음)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중개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⑤ (현행과 같음) ⑥ 이 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하여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및 「금융소비자 보호	③ (개정안과 같음) ④ (개정안과 같음) ⑤ (개정안과 같음) ⑥ (개정안과 같음)
--	--	---

에 관한 법률」을
적용하지 아니한다.
이 경우 "금융투자
업자"는 "외국환중
개회사"로, "금융투
자업"은 "외국환중
개업무"로 본다. 다
만, 「자본시장과
금융투자업에 관한
법률」 제37조, 제3
9조, 제44조, 제54
조 및 그 밖에 투
자자 보호를 위하
여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
같은 법을 준용할
수 있다.

에 관한 법률」을
적용하지 아니한다.
다만, 외국환중개회
사의 거래상대방
보호를 위하여 다
음 각 호의 구분에
따른 규정을 준용
하며, 이 경우 "금
융투자업자" 또는
"금융상품판매업자"
는 각각 "외국환중
개회사"로, "금융투
자업" 또는 "금융상
품판매업"은 각각
"외국환중개업무"로
본다.

1. 일반외국환중개
업의 경우: 「자
본시장과 금융투
자업에 관한 법
률」 제37조부터
제39조까지, 제44
조, 제54조, 제55
조 및 그 밖에
대통령령으로 정
하는 규정

2. 대고객외국환중

개업의 경우: 다
음 각 목의 구분
에 따른 규정

가. 전문금융기관

등과 외국환중
개회사 간의
거래: 제1호에
따른 규정

나. 전문금융기관

등 외의 자와
외국환중개회
사 간의 거래:
제1호에 따른
규정과 「금융
소비자 보호에
관한 법률」
제14조, 제16
조, 제17조, 제
19조부터 제21
조까지, 제22
조, 제24조부터
제26조까지, 제
28조 및 그 밖
에 대통령령으
로 정하는 규

⑦ (생략) 제13조(외국환평형기금) ① ~ ⑫ (생략) <u><신설></u>	<u>정</u> ⑦ (현행과 같음) 제13조(외국환평형기금) ① ~ ⑫ (현행과 같음) <u>⑬ 한국은행은 제7항의 외국환평형기금 채권(원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 한정한다)의 소유자가 되려는 자가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되려는 자의 신청으로 이들을 갈음하여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전자등록기관”이라 한다)을 명의인으로 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등록(「국채법」에</u>	⑦ (개정안과 같음) 제13조(외국환평형기금) ① ~ ⑫ (개정안과 같음) <u><삭제></u>
--	---	--

<신 설>

<신 설>

따른 등록을 말한
다)을 할 수 있다.

⑭ 한국은행은 제1
3항에 따라 전자등
록기관의 명의로
등록된 외국환평형
기금 채권이 「주
식·사채 등의 전
자등록에 관한 법
률」에 따라 소유
자의 명의로 전자
등록될 수 있도록
제13항의 등록 내
용을 전자등록기관
에 통지하여야 한
다. 이 경우 「주식
·사채 등의 전자
등록에 관한 법
률」 제25조 및 제
26조를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
은 공포 후 6개월이
경과한 날부터 시행
한다. 다만, 제13조
제13항 및 제14항
의 개정규정은 공
포한 날부터 시행

<삭 제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-----

-----. <단서
삭제>

<u><신 설></u>	<u>한다.</u> <u>제2조(유효기간) 제1</u> <u>3조제13항 및 제14</u> <u>항의 개정규정은 2</u> <u>025년 12월 31일까</u> <u>지 효력을 가진다.</u>	<u><삭 제></u>
<u><신 설></u>	<u>제3조(외국환중개업</u> <u>무 인가에 관한 경</u> <u>과조치) 이 법 시행</u> <u>전에 종전의 제9조</u> <u>제1항에 따라 외국</u> <u>환중개업무의 인가</u> <u>를 받은 자는 제9조</u> <u>제1항제1호의 개정</u> <u>규정에 따른 일반외</u> <u>국환중개업의 인가</u> <u>를 받은 것으로 본</u> <u>다.</u>	<u>제2조(외국환중개업</u> <u>무인가에 관한 경과</u> <u>조치) (개정안 부칙</u> <u>제3조와 같음)</u>

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대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0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7. 10.

발 의 자 : 박대출 · 김상훈 · 강승규
권영세 · 유용원 · 송석준
구자근 · 김태호 · 이종욱
박성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외국환중개업은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에 대한 중개만을 의미하며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 등 고객과 금융기관 간 거래에 대한 중개는 허용되지 않고 있어, 고객의 거래 편의성 및 가격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음. 이에 따라 대(對)고객 외국환중개업에 대한 인가 제도를 도입하여 수출기업 등 개별 고객들의 환전 편의와 가격 선택권을 제고하고, 금융기관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1항제16호의2 신설 및 제9조).

※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

- 가.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거래상대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수정함(안 제9조제1항제2호).
- 나. 안 제13조제13항 및 제14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각각 삭제함(안 제13조 및 안 부칙).

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6의2. “외국환중개업무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외국통화의 매매·교환·대여의 중개

나.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

다.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업무

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”를 “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외국환중개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·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인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획재

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1. 일반외국환중개업: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전문금융기관등”이라 한다) 간의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영업

2. 대(對)고객외국환중개업: 전문금융기관등과 전문금융기관등에 속하지 아니한 외국환거래 상대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간의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영업

②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자(이하 “외국환중개회사”라 한다)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를 상대로만 외국환중개업무를 하여야 한다.

⑥ 이 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하여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및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외국환중개회사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며, 이 경우 “금융투자업자” 또는 “금융상품판매업자”는 각각 “외국환중개회사”로, “금융투자업” 또는 “금융상품판매업”은 각각 “외국환중개업무”로 본다.

1. 일반외국환중개업의 경우: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, 제44조, 제54조, 제55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

2.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정

가. 전문금융기관등과 외국환중개회사 간의 거래: 제1호에 따른

규정

나. 전문금융기관등 외의 자와 외국환중개회사 간의 거래: 제1호에 따른 규정과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4조, 제16조, 제17조,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, 제22조,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, 제28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외국환중개업무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외국환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16. (생 략) <신 설>	제3조(정의) ① ----- -----. 1. ~ 16. (현행과 같음) 16의2. “외국환중개업무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가. 외국통화의 매매·교환·대여의 중개 나.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다.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업무
17. ~ 20. (생 략) ② (생 략)	17. ~ 20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9조(외국환중개업무 등) ① 다음 각 호의 업무(이하 “외국환중개업무”라 한다)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·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인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	제9조(외국환중개업무 등) ① 외국환중개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·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인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1. 외국통화의 매매·교환·대여의 중개
2.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
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업무

② 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를 인가받은 자(이하 “외국환중개회사”라 한다)가 외국환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 거래의 상대방은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.

③ (생략)

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중개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

1. 일반외국환중개업: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전문금융기관등”이라 한다) 간의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영업

2. 대(對)고객외국환중개업: 전문금융기관등과 전문금융기관등에 속하지 아니한 외국환거래 상대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간의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영업

②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자(이하 “외국환중개회사”라 한다)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를 상대로만 외국환중개업무를 하여야 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

다.

⑤ (생략)

⑥ 이 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하여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및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7조, 제39조, 제44조, 제54조 및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을 준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“금융투자업자”는 “외국환중개회사”로, “금융투자업”은 “외국환중개업무”로 본다.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이 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하여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및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외국환중개회사의 거래 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며, 이 경우 “금융투자업자” 또는 “금융상품판매업자”는 각각 “외국환중개회사”로, “금융투자업” 또는 “금융상품판매업”은 각각 “외국환중개업무”로 본다.

1. 일반외국환중개업의 경우: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, 제44조, 제54조, 제55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

2.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경우:
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정

가. 전문금융기관등과 외국환중개회사 간의 거래: 제1호에 따른 규정

⑦ (생략)	<u>나. 전문금융기관등 외의 자 와 외국환중개회사 간의 거래: 제1호에 따른 규정과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4조, 제16조, 제 17조, 제19조부터 제21조 까지, 제22조,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, 제28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</u> ⑦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	--